



의안번호

제46호

##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박영자 의원 외 11명
제출연월일	2022. 04. 13.

#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46호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04. 13.

대표발의자 : 박영자

공동발의자 : 김만중, 조용훈,  
최정숙, 이계천,  
차경선, 박승용,  
김진호, 조배식,  
구본선, 김남충,  
서 원

## 1. 제안이유

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 (안 제4조)
- 나. 지원 (안 제5조)
- 다. 지도감독 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 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제16조  
「보건의료 기본법」 제4조  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
- 나. 입법예고 : 2022. 04. 13. ~ 04. 17.(5일간)

## □ 조례안

논산시의회 조례 제 호

# 논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응급의료기관”이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말한다.
2. “응급의료”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·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
3. “응급환자”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응급의료서비스”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응급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①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)**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시설·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
2.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지도감독)**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원 중단 등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·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
2.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박영자 의원 외 11명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□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정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□ 「보건의료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□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36조(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)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감염병 관리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